



선	기관의 장
람	

제1447호

2026년 9월 23일(수)

- 차례 -

입법예고

제2026-1425호	「강화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1
	입법예고	
제2026-1427호	「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입법예고	

입법 예고

강화군 공고 제2026-1425호

강화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강화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강 화 군 수

1. 제정 조례명: 강화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강화군민의 감염병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다양한 예방접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선택예방접종 지원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예방접종 비용지원, 대상자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강화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4.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 ~ 10. 13.(20일)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3일까지 강화군수(건강증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032-930-4076)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서 접수처

- 1)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26-1(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2) 팩스: 032-930-3642
- 3) 전자우편(이메일): pye0327@korea.kr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청회 개최계획: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강화군민의 감염병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다양한 예방접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택예방접종 지원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자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강화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등

나.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강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감염병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화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선택예방접종”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라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으로, 별표 1의 예방접종을 말한다.
- ② “통합관리시스템”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③ “위탁의료기관”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선택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군수는 감염병 및 질병의 발생 및 유행 상황,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① 지원대상 및 추진방향
- ② 세부 추진계획
- ③ 소요 예산
- ④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선택예방접종 비용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선택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및 기준) ① 선택예방접종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예방접종일 현재 강화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2.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예방 접종 금기 대상자
3. 해당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③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지원 범위 및 접종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선택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선택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백일해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접종 편의를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전 진찰 등을 받는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접종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선택예방접종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2의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선택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택예방접종 기록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선택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에 선택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위탁계약 해지 등)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②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선택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등) ①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

종 후 군수에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상환 신청을 받으면 청구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비용 상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 상환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접종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①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 ②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3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상환받거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비용을 상환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군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1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기준(제2조제1호 및 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횟수	지원 범위	접종장소
인플루엔자	매년 1회	전액 지원 (백신비 및 시행비)	보건소·보건지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대상포진	1회	생백신: 전액 지원	보건소·보건지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사백신: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관내 위탁의료기관
폐렴구균	1회	전액 지원 (백신비 및 시행비)	보건소·보건지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HPV)	최대 3회	전액 지원 (백신비 및 시행비)	보건소·보건지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백일해	임산부: 임신 시마다	5만원 이내 실비 지원	관내 위탁의료기관 및 임산부의 산전 진찰의료기관 등
	배우자 및 조부모 : 10년마다		

[별표 2]

선택예방접종 대상자 및 증명서류(제5조 제1항 및 제7조제1항)

구 분	대상자	증명서류	
인플루엔자	15세 이상 64세 이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대상포진	65세 이상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폐렴구균	40세 이상 64세 이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HPV)	18세 이상 26세 이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백일해	임산부, 배우자 및 조부모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및 임산부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추가 (배우자 및 조부모)	임산부 또는 출생아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선택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백일해)

신청인 (접종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호자 (대리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수집목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인 2. 개인정보수집항목: 신청서 기재 또는 제출서류 항목 3. 이용 및 보유기간: 5년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강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진료비영수증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해당 시) ☐ 진료비 세부내역서			

[별지 제2호 서식]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제13조제3항 관련)

번 호	환수대상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예방접종 실시 내용						환수 결과	
	확 인 일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접 종 명	제 조 번 호	접 종 일 시	접 종 자	예 진 의	환 수 사 유	일 자	금 액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강화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강화군 공고 제 2026-1427호

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강 화 군 수

1. 개정 조례명 : 「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및 모범 및 스마트 경로당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중복 규정 정비 및 상위법령·법제처 권고사항 반영을 통한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

3. 주요내용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근거 마련(안 제8조의2~제8조의5)
- 모범 경로당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12조)

- 스마트 경로당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사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 상위법령 미부합 조항 정비(안 제8조, 안 제14조제1항)
- 조항 삭제(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화군수(가족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조례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2) 팩스 : 930-3838

※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930-3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화군 홈페이지(www.ganghwa.go.kr →강화소개→강화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행정규제 사전심사 결과 : 규제없음

6.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 조례 제 호

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중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로효친 하는 사회”를 “경로효친의 사회적”으로, “노인들이”를 “노인이”로,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31조에서 정한”을 “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시설을 말한다

2의2. “스마트 경로당”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노인에게 건강관리, 교육, 문화·여가 및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3. “노인단체 등”이란 노인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또는 사회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중 “각종 행사 시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예우”를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서 노인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거나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등 노인을 예우하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로, “조례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도별”을 “매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복지정책”을 “노인복지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을 “일반특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강 및 영양상태,”를 “건강, 영양상태 및”으로 한다.

2. 소득, 재산 현황 및 주거 실태 등 경제 관련 사항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노인단체 등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이용 및 생활자”를 “이용자·입소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노인단체 등 지원”을 “노인단체 등 지원 및 지역봉사지도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단체 등”을 “노인”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노인단체 등에”로, “비용”을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사에 관한 사항”을 “행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여가 활동”을 “노인의 여가활동”으로,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을 “노인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는 노인단체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범위에서 무상”을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무상”으로 한다.

제3장에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의3(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지역봉사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방문·전화 등을 통한 안부 확인
3. 폭염·한파 및 재난 발생 시 취약노인 안전 확인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의4(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①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비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여부 및 활동실적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활동비의 지급기준, 활동실적 확인방법 및 그 밖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 “경로당 지원”을 “경로당 및 스마트경로당 지원 등”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로당 시설”을 “경로당”으로, “냉·난방연료비”를 “냉·난방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축 및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을 “신축·증축·개수·보수 및 장비 보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회원들”을 “회원”으로, “체력단련 기구 설치·유지관리비”를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여”를 “교육·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등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표창”을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물품을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모범경로당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스마트 경로당 구축·운영) ① 군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경로당 이용자의 건강관리 및 여가·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마트 경로당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추진하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운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 경로당 정보통신망 및 통합운영시스템의 설치·운영
2. 비대면 건강·교육·문화·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스마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스마트 경로당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 및 대행·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고,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회장”을 “경로당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으로,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을”로, “공개해야”를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에서 지원되는”을 “군이 지원한”으로, “지출은 다른 수입금과는 별도로 정리하고 보조금의 세부지출내역”을 “지출을 다른 수입금과 구분하여 정리하고, 보조금의 세부 지출내역”으로, “읍·면장”을 “관할 읍장·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계획”을 “경로당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수익활동 등의 지원)”을 “(사회참여 및 소득활동 지원)”으로 하

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을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창출을 위하여”로, “등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를 “등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권한위임)”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권한을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를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로, “그 일부를 읍·면장”을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할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u>경로효친하는 사회</u> 분위기를 조성하고 <u>노인들이</u>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u>강구하여</u> 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u>노인들의 복지증진을</u>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경로효친</u> <u>의 사회적</u> ----- <u>노인이</u> ----- ----- <u>마련</u> <u>하여</u> ----- ---- <u>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u> <u>함</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u>경로당</u> ”이란 「 <u>노인복지법</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u>강화군수</u> (이하 “ <u>군수</u> ”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u>군수가 설치한 시설</u> 을 말한다.	2. “ <u>경로당</u> ”이란 「 <u>노인복지법</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u>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u> 으로서 <u>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시설</u> 을 말한다
<신설>	2의2. “ <u>스마트 경로당</u> ”이란 <u>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노인에게 건강관리, 교육, 문화·여가</u>

3. “노인단체 등”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등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강화군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군수는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예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및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3. “노인단체 등”이란 노인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또는 사회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 법 제31조에 따른 -----.

제3조(책무)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
-----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서 노인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거나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등 노인을 예우하도록 노력---.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증진에 관하여 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주요 복지정책

가. ~ 라. (생략)

4.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연령·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 및 영양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7조(경로행사 등) 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어

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조례에
선 -----.

제6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 매년 -----

-----.

1. 2. (현행과 같음)

3. --- 노인복지정책

가. ~ 라.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일
반특성

2. 소득, 재산 현황 및 주거 실태 등 경제 관련 사항

3. 건강, 영양상태 및 -----

4. (현행과 같음)

제7조(경로행사 등) ① -----

인교육에 관한 사항

4. (생 략)

② 군수는 노인단체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신 설>인교육

4.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 재산-----
-----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무상-----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의3(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지역봉사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방문·전화 등을 통한 안부 확인
3. 폭염·한파 및 재난 발생 시 취약노인 안전 확인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제4장 경로당 지원

제10조(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제4호에 따라 군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군에서 설치한 경로당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노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제8조의4(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비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여부 및 활동실적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활동비의 지급기준, 활동실적 확인방법 및 그 밖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장 경로당 및 스마트경로당 지원 등<삭 제><삭 제>

제12조(경로당 지원) ① -----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

2. 신축 및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비

3. 경로당의 기능 강화와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시설과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 기구 설치·유지관리비

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③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

----- 운영 -----

-----.

1. 경로당 ----- 냉·난방비

2. 신축·증축·개수·보수 및 장비 보강 -----

3. ----- 회원-

----- 체력단

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4. 교육·여-----

5. -----

-- 위하여 -----

----- 드는 -----

② -----

-- 등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③ -----

----- 고려

하여 -----.

④ -----

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물품을 지원---

⑤ 제4항에 따른 모범경로당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의2(스마트 경로당 구축·

운영) ① 군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경로당 이용자의 건강관리 및 여가·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마트 경로당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추진하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운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 경로당 정보통신망 및 통합운영시스템의 설치·운영

2. 비대면 건강·교육·문화·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스마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스마트 경로당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
·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
인·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
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경우 예산
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 및 대행
·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
고,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3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
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
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

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

제14조(운영공개 등) ① 회장은
매년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
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적
인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회원
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
다.

② 회장은 매년 군에서 지원되
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다
른 수입금과는 별도로 정리하고
보조금의 세부지출내역 등을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
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
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제17조(수익활동 등의 지원) 군수
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
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

제14조(운영공개 등) ① 경로당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
라 한다)-----

-- 사항을 -----
----- 공개하여야 -
--.

② ----- 군이 지원한 --
----- 지출을 다
른 수입금과 구분하여 정리하
고, 보조금의 세부 지출내역 --
----- 관
할 읍장·면장-----

<삭 제>

제1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

----- 경로당 지원계획-----
-----.

제17조(사회참여 및 소득활동 지
원) -----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

킬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공동
작업장, 노인일자리 등의 개발
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위임) 군수는 노인복
지 증진에 관한 권한을 「강화
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득 창출을 위하여 -----
----- 등을 개발
하고 지원하도록 -----
---.

제18조(권한의 위임) --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노
인복지증진에 관한 권한의 일부
를 관할 읍장·면장-----

<삭 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